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차 개정	2011. 04. 30
제2차 개정	2014. 03. 20
제3차 개정	2016. 12. 23
제4차 전면개정	2019. 5. 0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이리신흥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 시행령 31조와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490 -217)
3.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4.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5.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6. 경찰청 범죄신고 112
7.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전국 국번 없이) 117
8. Wee센터(8508-995, 852-4502)

제9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다목적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0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2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 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3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4【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국내외 모두 10일 이내 인정)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5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①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1일)

② 입양 : 본인(20일)

③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제16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6년 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17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질병임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결석계를 제출하여 담임이 인정한 경우

② 미인정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18조【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19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0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1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2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교에 오면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끄고 생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3조【회원】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4조【권리 및 의무】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5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6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학생회 임원】학생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2인(6학년 1인, 5학년 1인)

제28조【학생회 임원의 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29조【학생회 회의】

1. 학생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회 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학생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학생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 3 장 학생생활 지도

제30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및 생활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안전도우미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1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3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4 장 학생 선도 및 징계 규정

제34조【근거】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및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학생에 대하여 훈육, 학교 내 봉사, 학부모 면담 등의 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인정하는 학교 문화를 창조하게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적용 범위】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본교 재학생이다.

① 학교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단계를 달리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한다.

② 학교장,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체벌을 금지(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 제3절 9조 2항)**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권의 소유】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권리는 본교의 교원에 한한다.

제37조【징계의 허용 범위】학생이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한 행동을 하여 이에 대해 교사가 3회 이상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 징계가 교육으로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①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② 학습 태도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③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손해를 끼치는 경우

제38조【징계의 허용 장소】학교장이 허가한 교장실, 교무실, 교실에서 행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의 방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

생의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훈계** : 선도 기준 내용에 따라 담임 - 생활인성인권담당교사 - 교감 - 교장의 단계로 지도한다.

② **학교 봉사** : 일과 중 학급 담임 또는 관련교사의 지도하에 일정한 봉사활동을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1. 특별교육이수 기간 및 전문기관에서 교육, 치료, 상담을 받는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선도 대상 학생의 생활환경이나 성격이 장기화 및 습성화 또는 문제의 심도가 깊은 자에게 명한다.
3. 선도 대상 학생의 생활환경이나 성격이 장기화 및 습성화 또는 문제의 심도가 깊은 자로 특별교육 이수 후에도 같은 문제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명한다.

제40조【선도기준】 선도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내 용	훈계에 의한 선도	상담	교내 봉사 1일	교내 봉사 2-7일	특별 교육 이수
예절	1	예의, 용의, 언행이 바르지 못한 학생	○				
	2	1항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3	품행이 불량하여 교내·외의 지탄을 받는 학생			○		
	4	교사에게 불손한 행동이나 언행을 한 학생				○	
준법	5	무단지각을 한 학생	○				
	6	실내화를 신고 실외에 나가는 학생	○				
	7	학교 게시물을 훼손한 학생	○				
	8	껌, 휴지, 기타오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침을 뱉는 학생	○				
	9	6,7,8항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10	학교 공공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수업	11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학생	○				
	1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13	수업거부를 선동한 학생				○	
사이버	14	어린이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15	컴퓨터와 핸드폰을 이용하여 모함, 비방, 욕설 등을 3회 이상 한 학생		○			
	16	게임기 사용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학생	○				
	17	16항을 반복적으로 위반 할 경우		○			

제41조【교외 부당행위 처리】징계 받을 만한 행위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학생 상호평가 방법으로 담임교사에 신고할 수 있게 하며 신고한 학생의 신분은 절대 보장한다.

제42조【사후지도】교육 벌 부과 후 학생의 감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 해당학생이 왜 벌을 받았는지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②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가정의 협조를 구한다.

제43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5 장 개정방법

제44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외】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